

의안번호	2202947
의 퇴 인	박충권의원
회 답 일	2024.10. 28.
추 계 번호	24D2912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(단체의 설립) 신설	-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친목과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 향상을 위하여 법인인 단체를 두며,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- 단체의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생활향상,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,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·조사,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사회공헌 활동,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요 정책 건의, 국내외 인식개선 및 여론조성 사업을 수행함 - 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	의무·재량 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0조의2(단체의 설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북한이탈주민 자활능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의 설립과 북한이탈주민 생활향상,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,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사회공헌활동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근거 신설(안 제30조의2 신설)
 -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자조 단체 설립 근거와 북한이탈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,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·조사 등 수행하는 단체의 수행사업을 열거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단체 설립과 사업의 범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함에 따라 단체의 설립과 보조금 신청이 증가할 수 있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2024년 9월 현재,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단체의 수는 130개(비영리법인 101개, 비영리민간단체 29개)로 나타나지만,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단체수는 통일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, 국가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
 - 이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수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증가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